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7월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『통합방위예규』적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평시 재해재난 및 대테러 작전과 전시 대비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부칙조항에 추가 신설

-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5837부대 6대대에서 작성한 “성주군 통합방위예규”를 적용한다.

○ 제명 띄어쓰기 (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)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입법예고 생략 (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)

5. 관련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제5조 , 제9조, 제17조

6. 참고사항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○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부 칙

① **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**(적용례)**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5837부대 6대대에서 작성한 “성주군통합방위예규”를 적용한다.